

2012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

위험에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나오라!

- 당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관

2012. 10. 12.

국회의원 박 남 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예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1. 소방공무원의 현실	1
2. 소방공무원 처우현황	3
1) 급여	3
2) 인센티브	4
3)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체계	8
3.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11
1) 소방업무 범위의 확대	11
2) 이원화된 시스템	12
3) 열악한 장비	14
4) 정착되지 못한 3교대	18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고통받는 소방관	19
4. 해외의 소방공무원 처우현황	24
1) 미국	24
2) 일본	26
3) 독일	27
4) 싱가포르	28
5. 소방공무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언	29
1)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당체계 마련	29
2) 노후장비 개선	31
3) 소방공무원의 일원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필요	32

어느 소방관의 기도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 1. 소방공무원의 현실

- 현대사회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각종 대형사고 발생 및 주변의 불안전 요인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역할도 기존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와 구급,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사전방지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는 '안전의 총 책임자'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방행정수요에 대한 행정조직 및 인력의 공급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고, 노후화된 장비·근무수당 미지급 등으로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오늘도 생사를 오가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임
- 2012년 8월 3일 부산시 사상구 신발제조공장 화재진화에 나섰던 북부소방서 삼락센터 소속 김영식 팀장이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했음
- 2012년 7월 20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유리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물탱크 내부로 추락하자 구조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던 김인철 소방장이 가스에 질식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 2011년 12월 경기도 평택 가구전시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업을 하다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이 화재현장에서 순직했음
- 201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중에 박동규 소방위 등 6명이 사망했음.

-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애도의 물결이 퍼져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노후장비 교체, 소방병원 건립 등의 주장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음

## 2. 소방공무원 처우현황

- 소방공무원은 총 38,522명(2012.8.31 기준)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처우는 동일함
  - 국가직 공무원은 본부인 소방방재청 직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및 지방소방본부장이며, 인원은 총 263명임
  - 나머지 소방서장 이하 실무진은 지방직이며, 인원은 총 38,259명임

### (1) 급여

- 소방공무원의 급여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음
- 기본급으로 소방사 1호봉은 1,259,000원부터이며, 최대는 소방정감 23호봉(한계호봉)으로 5,438,100원임
- 이와 함께 정근수당(기본급의 5%~최고50%/1월, 7월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130,000원/2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시간외 수당(최대67시간/소방위 19호봉 기준 618,340원), 정액급식비(130,000원), 직급보조비(105,000~650,000원) 등이 매월 지급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 급여]

(단위 : 원)

구분	최소 급여	최대 급여
소방사	1,259,900	2,651,600
소방교	1,359,300	2,841,400
소방장	1,461,800	3,073,800
소방위	1,614,900	3,318,200
소방경	1,807,500	3,598,700
소방령	2,092,500	3,957,000

소방정	2,326,900	4,257,500
소방준감	2,591,500	4,649,000
소방감	2,872,600	5,042,100
소방정감	3,190,800	5,483,100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2) 인센티브

### ①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종류

- 소방공무원의 경우 수당 16종과 실비변상 4종 등 총 20종의 수당 및 실비변상을 받고 있음
- 아래의 표에서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소방공무원 수당에 해당함. 특수업무수당은 총 4종류로 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항공수당, 특수직무수당 등이 있음

#### [소방공무원 수당 종류]

구분		종류
수당 (16종)	상여수당(3종)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3종)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1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5종)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4종)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4종)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출처 : 입법조사처]

## ②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내역

-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1~7에 해당하는 수당은 일반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시간외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는 8~15부분이 소방공무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해경포함)과 마찬가지로 현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야간근무와 휴일근무가 모두 적용되며,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도 별도의 시간제한이 없음<sup>1)</sup>

### [2011년도 소방공무원 정액수당 등 총괄현황]

순번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방법	비고
1	가족수당	전 직원	○배우자 : 월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30,000원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자녀부터 월 30,000원 추가	매월 지급
2	정근수당	전 직원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1월, 7월(2회)
3	정근수당 가산금	전 직원	○20년이상~25년미만 : 월 10,000원 ○25년이상 : 월 30,000원	매월 지급
4	위험근무 수당	전 직원	○50,000원(갑종) ○40,000원(을종)	매월 지급
5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	분기별 지급
6	관리업무 수당	소방정 이상	○월 봉급액의 9%	매월 지급

1) 일반 공무원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시간외수당의 경우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7	육아휴직 수당	30일 이상 육아휴직 신청직원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현 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기 본급의 40%, 하한 50만원~상한 100 만원)로 변경 -다만, 지급액의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지급기간내 매월지급
8	시간외 근무수당	전 직원	◦단가 : 해당계급 10호봉 기본급 *0.59*1/226*1.5 ◦초과근무 1시간당 해당단가 지급			매월 지급
9	야간근무 수당	현업대상자	◦단가 : 해당계급 10호봉 기본급 *0.59*1/226*1.5 ◦야간근무 1시간당 해당단가 지급 (22:00-익일06:00)			매월 지급
10	휴일근무 수당	현업대상자	◦단가 : 해당계급 10호봉 기본급 *0.59*1/30*1.5 ◦휴일근무 1일당 해당단가 지급			매월 지급
11	특수지 근무 수당	특수지근무 직원	◦특지 : 월 6만원 ◦갑지 : 월 5만원 ◦을지 : 월 4만원 ◦병지 : 월 3만원			매월 지급
12	기술정보 수당	지급대상소방공 무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영 별표 9의 제10 호 참조			매월 지급
13	연구업무 수당	공무원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방소방령 이상 : 월 60,000원 ◦지방소방경 이상 : 월 40,000원			매월 지급
14	항공수당	항공기조정사(정 비사) 및 소방공무원	구분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	매월 지급
			지방소방령 이상	631,700원	313,400원	
			지방소방경	505,300원	279,100원	
			지방소방위	404,200원	217,800원	
			지방소방장	323,400원	196,000원	
			지방소방교	258,600원	184,200원	
			지방소방사	205,900원	174,200원	
15	특수직무 수당	인명구조·화재진 압소방공무원	◦월 8만원 이하			매월 지급

[출처 : 입법조사처]

### ③ 소방공무원에 지급되는 실비변상 내역

- 소방공무원에게 수당 외에 지급되는 실비변상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매월 20일에 지급됨. 실비변상 중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해당 달에 한하여 추가되어 지급됨
-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경우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외에 실비변상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직급 및 분야에 따라 아래 항목들을 합한 금액이 매월 20일 지급되고 있음
- 행정소방직과 현장소방직의 처우를 비교했을 때 현장소방직의 초과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며, 업무 특성상 현장소방직이 위험수당(50,000원), 화재진압수당(80,000원), 구조구급수당(100,000원) 등을 업무환경에 따라 받을 수 있음

#### [소방공무원 실비변상 내역]

순번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방법	비고
1	정액급식비		전 직원	○매월 130,000원	매월 20일 (선지급)
2	직급보조비		전 직원	○준감-500,000원, 정-400,000원, 령-250,000원, 경·위-155,000원, 장-140,000원, 교·사-105,000원	
3	직무수행 경비	대민 활동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전 직원	○해당사항없음 (방호활동비와 병급불가)	
		방호 활동비	소방령 이하	○매월 170,000원	
		구조구급 활동비	구급대, 구조대, 소방정대, 항공대 소방서 구조구급과 직원	○매월 100,000원	

[출처 : 입법조사처]

### (3)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체계

-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됨

#### [순직 소방공무원 보상체계]

요건	구분	현장활동 순직	일반근무 순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구분	순직군경	-
	보상금	1,055천원(월)	-
	교육지원 <sup>2)</sup>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취업지원 <sup>3)</sup>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점 받음	
	의료지원	유족, 가족 60% 감면(보훈병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구분	-	재해 사망군경
	보상금	-	739천원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취업지원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점 받음	
	의료지원	유족, 가족 60% 감면(보훈병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연안장		국립묘지안장심의 회 심의후 안장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할 경우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생기며, 경찰도 공무수행 중 순직할 경우 안장대상임
-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수행 또는 실습 훈련 중 순직’으로 국가유공자 기준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고유 업무 중 순직하더라도 업무와 순직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2) 초·중고, 대학의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면제(대상 :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대)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취업지원 및 채용시험 가점(대상 : 국가 유공자와 유족)

- 지난 7월 강원 속초시에서 고양이 구조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김 종현 소방교는 직무수행 중 순직하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음. 국가보훈처는 김 소방교를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했으나 국립묘지행은 불허함

“고양이 구조 중 순직한 소방관, 국립묘지 거절돼”

(2012.9.6 / 매일경제)

- 고양ی 구조 활동 중 건물에서 추락사한 소방관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소방서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도 각하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족과 속초소방서는 A소방교가 관련법상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국가보훈처의 심의 결과와 관련해 A소방교를 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순직 공무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속초소방서와 유족에게 A소방교는 이미 ‘순직 군경’에 등록돼 있어 ‘순직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또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닌 국가보훈처가 속초소방서에 A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불가를 통보한 행위는 무효이며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안장신청자는 배우자와 가족이 돼야 하며 연고자가 없을 때 등 특이 경우에만 기관장 명의를 인정한다며 속초소방서장이 청구인이 된 것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각가 처리했다. 속초소방서측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A소방교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을 계획이다.

“미국 보훈예산만 162조... 4조 한국과 대비”

(2012.6.25 / 서울경제)

- 미국·호주·캐나다 등 선진국의 보훈 기관은 우리의 차관급과 달리 대부분 장관급으로 꾸려져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은 보훈부(장관급)에서 보훈정책을 관장하며, 공무원 수만 28만명이 넘는다. 계약직을 포함하면 무려 31만3,539명이 유공자들을 돕고 있다. 대상은 인구대비 8% 수준인 2,307만명이며, 가족을 포함하면 5,000만명(인구대비 18%)이다. 주로 군복무 상이자인 경우가 많고, 전사자 유족과 참전군인 제대군인도 있다. 정부 예산은 1,411억 달러로 원

화로는 약 162조원(1달러=1,150원 적용) 규모다. 전체 정부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예산은 보상금과 연금지급, 의료·취업·대부지원과 생명보험사업 등에 사용된다.

캐나다는 보훈부(장관급)에 3,859명의 공무원들이 80만명(인구대비 2%)을 돌보고 있다. 전사·순직군인 유족과 순직경찰·소방관, 참전군인, 전시에 동원된 상선 승무원 및 민간인이 그 대상이다. 예산은 34억 달러 규모로 원화로는 약 3조8,000억(1달러=1,120원 적용) 수준이다. 전체 정부 예산의 2%다.

호주 역시 보훈부(장관급)로 2,050명의 공무원들이 114만명(인구대비 5.7%)의 유공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상이군인 및 미망인 또는 참전군인(60세 이상), 제대군인(6년 이상)들이 대부분으로 보상금·연금, 의료·대부·주택지원 등을 받고 있다. 예산은 정부예산의 3%로 121억달러 즉 원화로는 약 14조원 정도다.

반면 국가보훈처(차관급)는 1,278명의 공무원이 유공자 본인과 유족 그리고 가족 등을 포함해 237만명(보훈대상자는 90만5,280명)의 행정대상을 두고 있다. 대상은 독립·국가·참전유공자를 포함해 5·18유공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상자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할 때 예산은 4조4,26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1.7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3.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 (1) 소방업무 범위의 확대

- 소방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방업무가 전통적인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 재난대응 등 생활 안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 노인전용 구급대 운영, 쪽방촌 등 저소득가정 소방안전대책 추진,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 RFID시스템 운영, 긴급위치추적,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약 등
- 소방 활동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구조건수는 지난 6년간 단 한번의 감소 없이 증가해 왔음
- 화재발생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3만 1,778건에서 2011년 4만 3,875건으로 12,097건 증가했음
- 2011년 구조건수는 31만 6,776건으로 2006년(11만 3,433건) 대비 2.79배 수준이며, 2011년 구급건수는 140만 5,263건으로 2006년(약 111만 건) 대비 1.26배 수준으로 나타났음

#### [소방대응활동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1,256,382	1,383,023	1,501,439	1,692,480	1,751,881	1,765,914
화 재	31,778	47,882	49,631	47,318	41,863	43,875
구 조	113,433	146,019	182,619	257,766	281,743	316,776
구 급	1,111,171	1,189,122	1,269,189	1,387,396	1,428,275	1,405,263

- 실제 시·도 등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업무는 화재뿐만 아니라 재해와 재난까지 포괄하고 하고 있음.

## (2) 이원화된 시스템

- 소방업무는 전통적인 화재예방이나 진압은 물론이고 대규모 재난 등의 구조·구급 활동, 안전사고의 긴급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및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발전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지방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된 이원 체제의 현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또한 시·도의 보조기관인 소방본부장을 국가소방공무원이 맡고 있다는 사실은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만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자체간 소방서비스의 질이 다른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시·도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임용 등 인사 관련 사항에서도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소방공무원 현황]

(2012.8.31 기준)

구분	계	국가	지방
계	38,522	263	38,259
소방총감	1	1	0
소방정감	1	1	0
소방감	8	8	0
소방준감	32	19	13
소방정	267	20	247
소방령	872	31	841
소방경	2,174	45	2,129
소방위	2,687	53	2,634
소방장	5,874	39	5,835
소방교	10,861	38	10,823
소방사	15,745	8	15,737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소방공무원 임용 변천과정]

1. 일반직공무원(1949.8.12 ~ 1969.1.6)
  - 1949년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함께 일반직공무원이 되었음
2. 별정직인 경찰공무원의 소방직(1969.1.7 ~ 1978.2.28)
  -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소방공무원은 별정직인 경찰공무원의 소방직으로 전환되었음
3. 소방공무원의 이원화(1973.2.8 ~ 1978.2.28)
  -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지방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인 경찰공무원의 소방직으로, 이원화된 체제로 되었음
4. 독자적인 소방공무원(1978.3.1 ~ 1982.12.28)
  - 1978년 3월 1일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찰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되었으나, 국가 및 지방 소방공무원의 이원화된 체제는 유지되었음
5. 특정직 소방공무원(1983.1.1 ~ 현재)
  - 1983년 1월 1일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국가 및 지방 소방공무원의 이원화된 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

### (3) 열악한 장비

- 화재진압·구조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 부상자 등 순직하거나 부상당하는 소방공무원이 매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업무영역이 넓어지면서 화재·구조 외에 교통사고, 안전지원, 장비점검 등에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사상자 발생현황]

구분	계	비율 (%)	'08	'09	'10	'11	'12 (8월 현재)
총계	1,592	100	346	358	348	363	177
화재진압	380	23.9	89	84	90	75	42
구조	160	10.0	28	50	41	31	10
구급	377	23.7	79	78	79	89	52
교육훈련	154	9.7	34	48	29	28	15
기타 <sup>4)</sup>	521	32.7	116	98	109	140	58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국회는 소방장비 예산 왜 깎았나”

(2012.1.27 / 경북일보)

- ‘소방장비의 중요성’을 대변해주는 사건은 2001년 미국 9·11테러이다.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으니 건물내에 있는 소방관들은 즉시 퇴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통신장비가 부실해서 그 명령은 그저 ‘잡음’으로만 들렸을 뿐이다. 그래서 건물 속에 있던 소방관 340명이 사망했다.

4) 기타는 교통사고, 안전지원, 장비점검, 체력단련, 행사지원, 경계근무 등을 뜻함

"소방관 생명 앓아간 사다리차, 사용 연한 4년 넘어"

(2011.1.23 / SBS)

- 광주에서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던 소방관이 사다리차 사다리가 갑자기 휘면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다리차는 사용 연한을 4년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 소방관을 목숨을 앓아간 고가 사다리차입니다. 사다리차 승강기가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추락 직후 엄청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휘어졌습니다. 굵은 승강기 쇠줄은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사다리차는 낡은 장비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다리차는 사용연한을 4년 넘겼습니다. 폐차해야 할 차량을 4년 넘게 사용한 겁니다.  
[소방서 관계자] “시 예산 확보가 안돼서..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바꿔주면 좋은데, 5억 넘는 차량이라 쉽게 바꿔주지 않습니다.  
광주 지역 5개 소방서에는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1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폐차기간을 넘긴 노후차량입니다.  
[소방서 관계자] “실제로 화재 현장이라든지 출동 훈련할 때, 사람을 태울 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장비를 믿어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노후된 소방장비를 교체하자는 네티즌들의 청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소방장비 노후화”자료에 따르면, 소방차의 경우 전국 7,625대 중 노후차 1,490대(노후율 19.5%)로 연평균 지방비 667억원으로 512대를 교체하고 있으나 노후율 개선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차종별 노후율 현황]

구분	보유현황	내용연수	경과차량	노후율
계	7,625		1,490	19.5%
펌프차	2,039	10년	484	23.7%
물탱크차	708	10년	119	16.8%
사다리차	392	15년	37	9.4%
화학차	269	10년	71	26.4%
지휘차	224	8년	36	16.1%
구조차	327	8년	24	7.3%
배연차	178	12년	16	9%
기타	3,488	5-12년	703	20.2%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등의 개인안전장비는 소요기준대비 17.3%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유기준 331,200점 중 237,837점 보유(57,363점 부족)
- 지급된 개인안전장비 237,837점 중 노후수량은 42,153점이며, 노후율은 15.4%임

**[개인안전장비별 보유현황]**

구분	내용연수	보유기준	보유수량	부족수량	노후수량	노후율
계(점)		331,200	273,837	57,363	42,153	15.4%
공기호흡기(1)	15년	36,504	34,809	1,695	1,220	3.5%
방화복(2)	3년	64,548	60,117	4,431	14,505	24.1%
헬멧(1)	5년	36,504	36,504	-	9,616	26.3%
안전화(2)	3년	64,548	51,121	13,427	12,996	25.4%
안전장갑(2)	소모품	64,548	52,867	11,681	소모품	
방화두건(2)	5년	64,548	38,419	26,129	3,816	9.9%

\* 괄호()안은 소방공무원 1인당 개인안전장비 지급기준을 의미함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개인안전장비는 16개 시·도별로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방화복의 경우 노후율이 가장 높은 광주(49.2%)와 가장 낮은 서울(2.9%)은 17배 차이가 나며, 안전화는 대구(58.2%)와 제주(0.3%)간의 차이가 무려 194배가 났음. 헬멧은 부산(54.4%)이 서울(2.6%)의 21배, 방화복은 부산(46.5%)이 서울(3%)의 16배로 나타났음

### [개인안전장비 노후율]

구분	방화복	안전화	헬멧	방열복
총계	24.1	25.4	25.2	21
서울	2.9	1.6	2.6	3
부산	41.7	38.3	54.4	46.5
대구	46.8	58.2	44.5	12.9
인천	31.4	24.7	27.1	31.5
광주	49.2	46.4	45.6	9.1
대전	40.4	37.5	33.5	9
울산	7.7	6.2	11.4	24.2
경기	20.6	21.9	19.1	14.3
강원	39.7	43.2	35	28
충북	40.4	33.1	37.5	32.5
충남	12.6	15.9	12.7	20.5
전북	33.7	22.7	47.5	26
전남	32	27.1	29.7	36
경북	38.6	45.4	26.8	26.4
경남	22.2	21	26.2	34
제주	7.4	0.3	10.3	0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소방장비의 노후화는 성능에 대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워 화재진압 시 또다른 안전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통한 교체보강이 절실하나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2005년 이후 중단되면서 지방의 소방장비보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소방장비 교체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지방사무임을 꼽는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름없음

#### (4) 정착되지 못한 3교대

-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부분 3교대 근무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2012년 6월 말 기준 3교대 실시비율은 91.6%임
- 서울 및 경기, 제주 지역은 아직 2교대 체제로 운영 중이나 빠른 시일내로 3교대 체제가 구축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소방인력 총원실적 : 2008년 1,222명, 2009년 2,033명, 2010년 2,697명
- 서울과 경기의 경우 3교대의 실시를 위해 각각 292명, 437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2013년 354명, 2014년 375명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부족인력을 확보하여 전원 3교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 제주는 자체 부족인력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
- 3교대 근무방식에 있어서는 ‘당비휴’ 방식(24시간 근무 후 48시간 쉼)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 근무방식은 △본래 3교대 근무실시 취지와 다르고 △업무의 연속성 문제, △제대로 된 소방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 △업무효율성이 낮은 점, △대형생산업체나 병원 간호사, △경찰 조직도 24시간 연속근무는 지양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방식보다는 화재·구조·구급출동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또는 소방서별로 합리적인 근무방식(당비비 제외)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시·도별 3교대 근무 현황]

(‘12.6.30 기준)

구분	정원	일근근무	교대근무			
			소계	2교대	3교대	3교대 실시비율
계	38,134	7,577	30,557	2,561	27,996	91.6
서울	6,359	1,544	4,815	1,597	3,218	66.8
부산	2,546	458	2,088	-	2,088	100.0
대구	1,959	370	1,589	-	1,589	100.0
인천	2,237	489	1,748	-	1,748	100.0
광주	1,092	220	872	-	872	100.0
대전	1,136	213	923	-	923	100.0
울산	827	158	669	-	669	100.0
경기	5,957	1,311	4,646	916	3,730	80.3
강원	2,203	386	1,817	-	1,817	100.0
충북	1,382	280	1,102	-	1,102	100.0
충남	2,059	424	1,635	-	1,635	100.0
전북	1,970	267	1,703	-	1,703	100.0
전남	2,062	290	1,772	-	1,772	99
경북	2,934	592	2,342	-	2,342	100.0
경남	2,764	441	2,323	-	2,323	100.0
제주	647	134	513	48	465	90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고통받는 소방관

- 2011년 소방방재청이 전국 소방관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현황조사결과, 1,452명(5%)이 정밀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그 중 39.7%가 우울증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최근 4년간 26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 최근 5년간(‘08~’12.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은 소방공무원은 총 6,811명으로 집계되었음
-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

-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247명으로 21%를 차지한 전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대전이 각각 3명(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외상 경험자 현황]**

구분	'08	'09	'10	'11	'12. 6월
계	1,773	1,863	1,881	1,452	1,152
서울	650	670	647	60	3
부산	125	124	126	3	17
대구	38	39	42	179	141
인천	207	217	228	1	71
광주	20	25	29	2	43
대전	18	20	22	17	3
울산	20	23	27	40	6
강원	102	122	113	168	13
경기	120	127	136	170	89
충북	78	80	80	101	96
충남	80	90	98	1	16
전북	90	90	92	33	247
전남	24	26	27	210	69
경북	90	96	102	232	25
경남	103	104	104	235	231
제주	8	10	8	8	82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2008~2010년의 수치는 외상을 경험한 적 있는 소방공무원의 현황, 2011~2012년 수치는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현황임

- 그동안 2002년 9월에 국회, 언론 등에서 소방공무원 진료비 부담해소를 위해 소방병원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독 소방병원 설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나 당시 △경영채산성과 지방거주자의 이용불편 등 실효성이 낮고, △민간병원의 의료수준 향상으로 소방전문병원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국립병원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이

중단된 적 있었음

- 그 후 2003년 10월 민간에서 '119사랑의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회원의 기금으로 119복지병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병원설립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병원 설립이 또다시 중단되었음
-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화재를 비롯해 각종 사고현장의 사상자 구조·수습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 2010년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 50.35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평균기준 48.41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 총점이 높게 나타났음
- 또한 2009년도 중앙소방학교에서 현직 소방공무원 299명에게 직접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것을 조사한 결과 27%의 소방공무원이 '처참한 시신을 목격한 일'을 꼽는 등 화재를 진압하는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의 13.3%는 '정신질환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더구나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 우울증을 겪다 자살까지 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도 함
  - 소방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유해 요인은 소방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직무상의 스트레스, 교대근무로부터 오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화재 진압, 재난 및 사고 대응 및 처리, 응급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경험하는 외상적 스트레스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문병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중앙에서는 경찰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치료를 받고, 지자체에

서는 지역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더구나 경북·전북의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지역 병원마저 없는 실정임

- 지난해 12월 23일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음
  -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검사·진료비를 국고로 지원
  - 이 외에도 정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연 1회), 자체상담요원 양성 및 상담활동, 소방관서별 위기상황 극복 프로그램 운영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참혹한 사고현장에서 사상자 구조·수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쉽게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소방전문치료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병원에서도 지속적인 전문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상경험자에 대한 관리체계 및 현황

- 심신건강관리 소방공무원 선별 기준
  -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건강 측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선별
- 심신건강관리 지원 절차 및 기준

▶ 사업 집행 절차

<1단계> 시·도 소방본부 심신관리 필요자 분류		<2단계> 심신건강 관리기관 관리		<3단계> 소방방재청 비용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건강검진</li> <li>▷ 현장출동 빈번 대원</li> <li>▷ 동료 및 기관장 추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관리 (본부별)</li> <li>▷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소방방재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건강 관리비 지급</li> <li>* 시도 소방본부 비용청구</li> <li>▷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지급</li> </ul>

▶ 사업 추진 계획

- 즉각적 치료 필요 직원, 충격현장 출동 대원 치료비 지원
  - 충격적 현장 목격 대원 등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직원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치료비를 소방방재청에 청구
  - 치료비 청구시 전문가 소견서 첨부
- 「심신건강관리 캠프」 운영
  - 힐리언스 선마을 프로그램
    - 교육 기간 : 8.15 ~ 10.26, 주 2회(월~수, 수~금) 입교
    - 교육횟수 및 인원 : 20회(2박3일), 800명(1기수당 40명)
  - 보훈교육연구원 프로그램
    - 교육 기간 : 8.27 ~ 10.26, 주 1회(월~금) 입교
    - 교육횟수 및 인원 : 8회(4박5일), 320명(1기수당 40명)

## 4. 해외의 소방공무원 처우현황

“미국 소방관 직업만족도 최상위권”

(2008.11.11 / 위클리경향)

- 2006년 시카고 대학이 수행한 사회총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방관들의 직업 만족도는 성직자(87%)에 이어 2위(80%)였다. 물리치료사, 작가, 교사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총조사를 책임진 시카고 대학의 톰 스미스 박사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가르치거나 보호하는 직업, 또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방관들은 삶에서 느끼는 행복지수에서도 성직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삶 전체의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미국 소방관들의 직업 만족도가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는데서 생기는 자긍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방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높아서기도 하다.

### (1) 미국

#### ① 근무 형태

- 미국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각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근무 형태는 주당 40시간 보다는 주당 56시간 근무 형태가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음
- 즉, 일근 직원을 제외한 진압대원은 24시간 단위로 당번-비번, 당번-비번, 당번-비번(48~96시간)을 반복하는 완전 3부제 근무 형태이며, 3부제 근무는 County와 City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출동횟수가 많은 뉴욕시의 경우 당비비비제이며 EMS(구급대)는 주-주-야-야-비-비제임. 출동이 많은 구급대의 경우에는 당번근무시간을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조를 빨리 교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용함

- 또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공정 노동시간을 지키고 있어 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없으며, 당번자가 질병 등으로 최소 출동인력이 편성되지 못할 때, 비번자를 근무시키고 수당을 지급함
  - 미국도 인력부족으로 이러한 수당지급이 늘어나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근무시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주당 84시간(24시간 2교대) → 67시간 또는 63시간 → 56시간(현재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로 변경되었음
  - 주당 53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급의 1.5배의 시간외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일부 주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을 근로기준에 맞추기 위해 무급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비번근무수당을 신설하여 비번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 따라서 근무시간은 주간에 10시간을 근무하고 14시간 동안 비번을 갖는 주 56시간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를 갖는 경우가 61%,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24시간 근무하고 72시간 휴무를 갖는 경우는 16%, 10시간 근무하고 14시간 휴무하는 경우가 12%, 무급휴가 도입 10% 등임
- 미국 FEMA에서는 화재나 구조의 재난현장에 재난심리전문가가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즉시 심리카운셀링 프로그램을 시작함

## ② 급여 현황

- 미국 소방공무원의 급여는 아래의 표와 같음

### [미국 소방공무원 급여]

(2011. 5월 기준)

구분	고용자수	평균 임금	
		시간당	연봉
일선(현장)감독관	58,210명	\$34.63	\$72,020
소방관	304,080명	\$22.94	\$47,720
화재 조사관	12,560명	\$27.45	\$57,100

[출처 : 미 노동부 노동통계청, 미국 직업별 통계자료, 2012.3.27]

## (2) 일본

- 일본은 2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인력충원 등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업무량이 많은 대도시부터 3부제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3교대를 실시하는 소방본부는 전체 911개 소방본부 가운데 23.2%에 해당하는 211개 소방본부만 3교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76.8%는 2교대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내·외근 근무의 구분을 두지 않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황실 또는 구급업무 등 격무부서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3교대제와 2교대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3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의 근무형태의 경우, 3개조 근무조로 편성하여 3주 주기로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당번일은 08:30분부터 익일 24:30분까지로 16시간을 근무하고, 8시간 10분 동안은 휴식 및 취침을 함

- 오전에는 반드시 각종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오후에는 자신이 맡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함
- 주요 대도시의 근무제도는 도쿄·교토의 경우는 3교대, 오사카·히로시마의 경우에는 2교대를 실시하고, 일부에서는 3교대와 2교대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음
- 참고로 일본은 한신대지진 이후 효고현에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관들은 일년에 두 차례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고, 소방관의 가족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 중임

### (3) 독일

#### ① 소방직원의 종류

- 독일에서는 상비소방, 의용소방, 사업소소방, 청소년소방 등이 있는데 그 중 사업소소방 및 청소년소방대원은 공무원이 아님

#### ② 근무 여건(베를린을 제외한 지역)

- 상비소방관의 경우 독일에서는 근무조건의 기본적인 것은 연방 공무원 기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음
- 주 56시간 근무로 통일되어 있지만 2부제 교대근무제 시간배당 등은 시·군·구에 따라 다름

- 의용소방대원은 각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보수는 없으나, 다만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보전 조치가 주어지고 자유업인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등에 의한 불이익이 생길 때, 이에 대해 보전을 해주고 있음(보전 등의 조치는 시·군·구에서 지급)
- 이들은 규정된 근무시간은 없으며 출동이 필요할 때 출동하게 되나 때 주말이나 평일 밤 2~3시간씩 훈련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리더에 해당하는 대원은 2주정도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함
- 베를린 상비 소방대원은 4,367명이며, 그 중 여성이 23명인데 상근 소방직원의 근무체제는 일근 11시간 30분, 야근 12시간 30분으로 4부 2교대체제 근무와 1근무 24시간으로 3부 1교대제 근무를 병용하고 있음
  - 근무 사이클은 일근(△), 야근(▽), 당번(○), 비번(X), 주휴(●)로 하며, 2교대체제의 경우에는 △▽X△▽X●●으로 8일 1사이클, 주당 42시간 근무, 8주 14휴무방식임
  - 1교대체제의 경우에는 ○X○X○X●●●으로 9일 1사이클 주당 56시간근무, 9주 21휴무 방식임

#### (4) 싱가포르

- 싱가포르 소방공무원의 근무체제를 보면 소방공무원 중 화재진압 대원은 당번 24시간, 비번, 비번 체제의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구급대원은 주간 12시간, 주간 12시간, 비번, 비번, 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비번, 비번 근무체제로 주당 48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5. 소방공무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언

### (1)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당체계 마련

- 수당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사고발생 후 여론에 의한 수당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 대한 업무시간 및 횟수, 위험도 등 세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개별 직군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당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위험근무수당의 경우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의 2단계로만 구분되어 있음. 얼마전 중국 선원에 의해 순직한 해경 특공대원에 대한 위험수당 역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현재의 위험근무수당은 해당 업무의 위험수준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험도를 반영한 위험수당의 세분화를 통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음

“매년 4,500명의 후배 소방관들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창창한 청년들이 위험수당 5만원에 불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현실에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소방관의 목숨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가치는 인정해줘야 한다.”

- 수원의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위

- 또한 2009년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300여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된 바 있음
- 이후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48,642명의 소방공무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총 26건(1심 11건, 2심 15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총 11개 시·도에서 초과근무수당 2,794억원을 가지급했음
- 그러나 아직까지 3,538억원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임

“대구소방공무원에 줄 초과근무수당 ‘219억원’ 더 있다”

(2012.7.26 / 영남일보)

- 대구시가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해야 할 수당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대구시는 지난 4월 1차로 167억원을 예비비로 지급했고 오는 10월 2차분 144억원을 집행할 방침이지만 향후 추가 지급 소요예산은 아직 화고하지 못한 상태다. (중략) 정부는 올 연말까지 보수규정(대통령령)을 신설해 내년부터는 법적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규정이 신설되면 당연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당을 때 맞춰 지급하게 된다.

“도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마련 어쩌나”

(2012.7.3 / 광주일보)

- 전남도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에게 3년간 미지급한 초과근무 수당 32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전전공공하고 있다. 최근 국내 곳곳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 제주, 전북, 서울, 대구 등지의 법원이 잇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도내 소방공무원 1,510명의 지난 2006년 12월~2010년 5월간 3년 6개월치 초과근무 수당 32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국가에 162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하고, 소방공무원의 업무 72% 가량이 국가사무 및 국가·지방 공동 사무이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의 일정 비율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전북 도내 소방공무원 대상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

(2012.3.30 / 서울신문)

- 전북도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346억원을 내년 말까지 세 차례 나눠 지급한다. (중략) 한편 소방공무원 중 2교대 근무자는 월 136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의 해석 차이로 월 60~8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청구했다.

## (2) 노후장비 개선

-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여건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화재 등 현장출동상황에서 노후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대응력 저하 및 안전사고와 직결되고 있어 노후율이 심한 장비에 대한 정밀점검과 더불어 우수한 장비도입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의 비율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화된 소방장비의 시급한 교체를 위한 국고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소방장비노후화율 제로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12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한 국비지원금 402억원 전액이 기재부의 반대로 삭감되었으며 2013년 정부 예산반영에도 실패한 상황임
  - '소방장비노후화율 제로화 5개년 계획'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향후 5년간 중·장기 지원을 하겠다는 것임

### [연도별 중기지원 계획]

(단위 : 대, 점, 억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049	209.8	209.8	209.8	209.8	209.8
소방차	917.5	183.5	183.5	183.5	183.5	183.5
개인장비	131.5	26.3	26.3	26.3	26.3	26.3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따라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를 소방시설·설비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방자원 확충방안]

유 형	대 안	구체적 내용
공동시설세 개편	과세대상 확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 유류, 전기, 가스, 화재보험금 및 손해보험금, 담배
	세율 개편	- 차량, 항공기, 녹지 등
		- 체차누진세율의 폐지 : 단일세율제 도입
		- 적정세율로 인상
국비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증액	- 최고세율구간 세분화
		-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 보조율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조정	- 매칭보조금 지원
부담금	부담금 신설	- 인구변수 외 다른 변수 사용
	부담금 전환	- 안전관리분야 비중 확대
자원 운영방식 개편	특별회계 운영	- 담배, 화재보험, 에너지원에 대 하여 부과
		-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계 적으로 공동시설세로 전환
		- 별도 자원 관리
		-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 도입
재원확보	- 부담금 및 부과금	
	- 공동시설세 세입 전액, 시도세의 일 정비율, 기초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신설될 지방소방재 정교부금 등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방자원 확충방안]

### (3) 소방공무원의 일원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필요

-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장비 보강을 목적으로 예산 402 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예산으  
로 할 일’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음
- 이는 소방공무원의 체계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서  
비롯한 것임. 2012년 지방소방예산에 따르면 전체 시·도별 총예산 대  
비 소방예산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며, 지자체별로도 소방예산의 비

## 올이 상이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방장비 구입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단순한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일로 규정해 지자체로 떠넘겨버린다면 이는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치안과 국방처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소방사무 중 약 72%가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임
  - 실제로 2008년 1월 7일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코리아 냉동창고 대형화재 사고 대응에 있어 인근 시·도의 소방본부(서울, 인천, 강원, 충북)가 동원되어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모두 전환될 경우 국가직 정원이 증원될 수 있으나, 그만큼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불구하고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수당체계, 노후되고 부족한 장비, 이원화된 시스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임
- 소득 증대, 도시화 등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소방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역시 상승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서비스의 국가직화를 통한 국비지원으로 재정뒷받침을 충분히 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7. .

발 의 자 :

찬 성 자 :

### 제안이유

현재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그러나 이원 체제의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의해 소방서비스의 질이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원화되어있는 소방공무원 체계를 일원화해 체계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소방공무원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단일화함(안 제3조).

나.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안 제4조).

- 다.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하되,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관계 하급기관의 장·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 사.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안 제18조).
- 아.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심사청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24조).
- 자.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안 제25조제1항).

차.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  
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  
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카.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함(안 제2  
8조).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소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에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국가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국가소방공무원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국가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급구분) 국가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2.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한다.

②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권 일부를 소방기관(「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하며,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부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관계 하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 중에서 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할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였던 소방공무원에 한한다.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관할 구역 소방기관의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소방기관의 종류와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 소방위 이상은 1년 기간의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하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방기관의 장, 관계 하급기관의 장 또는 제18조제1항의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을 소방공무원 수, 소방위의 정원·결원상황 및 승진상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승진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

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제9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은 시험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경우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다.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의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근속승진) ①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방재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제19조제1항의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

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17조(보훈)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제18조(교육훈련) ① 소방방재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및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허위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또는 구조·구급 등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임하여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 4년

소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 —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여부를 불문하고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산입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

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24조(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각각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서 행한다.

② 소방청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각각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징계의결의 요구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되, 제26조제1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행한다.

②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 또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그 밖의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그밖에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제29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30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31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는 "이 법 제13조 및 제14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68조·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제32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제20조에 위반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제19조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소방공무원법」 부칙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방공무원법」 부칙 중 이 법 시행 당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해당 부칙 및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시행 후에도 해당 부칙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정감"은 "소방정감"으로, "지방소방감"은 "소방감"으로, "지방소방준감"은 "소방준감"으로, "지방소방정"은 "소방정"으로, "지방소방령"은 "소방령"으로, "지방소방경"은 "소방경"으

로, “지방소방위”는 “소방위”로, “지방소방장”은 “소방장”으로, “지방소방교”는 “소방교”로,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계급의 경력은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계급정년, 시보임용 등 인사 업무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4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공무원 이체) 이 법 시행 당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그 밖의 소방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이체받는다.

제5조(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선발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선발시험 공고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한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공고로 보고, 채용·선발시험 공고에 있는 시험 절차 및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절차 및 방법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시킨 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채용·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채용·선발시험 관련 서류 전부를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가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서류 전부를 국가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 관련 서류 전부를 국가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평점 등 교육훈련 결과를 국가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제8조(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 고충심사위원회 또는 시·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며, 지방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사건으로서 시·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소방방재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 시·도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소방방재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각각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 사건으로서 시·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소방방재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소방방재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종료되었으나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 의한 징계 처분이 행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12조(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피고는 이 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처분권자가 행한다.

제13조(직위해제·휴직·파견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휴직·파견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처분권자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직위해제·휴직·파견 또는 정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 중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⑥ 법률 제11341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앙·지방 소방학교”를 “소방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를 “소방방재청장이”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국가”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은”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 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소방방재청장은”으로, “소방본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⑦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과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한다.

⑧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를 ““지방소방방재청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를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를 “소방방재청장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본부”를 “지방소방방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 중 “소방본부”를 “지방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본부”를 “지방소방방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의 조례로”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로부터”를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1조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소방본부”를 “지방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의 조례로”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의 조례로”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49조 중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을 “지방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소방방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을 “지역민방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를 “민방위조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113조 중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